

교육과정혁신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15.04.01.

개정 2019.04.29

개정 2019.09.30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과정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원활한 관리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센터의 제반 운영에 적용한다.

제 2장 조직 및 업무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이상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교육과정혁신센터를 총괄하며, 본 센터를 대표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전담 행정직원을 둔다.

② 본 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의 자문과 심의는 “교육과정혁신위원회”를 통해 실시한다.

제5조(업무) 본 센터는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, 비전과 사명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핵심역량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업무
2.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양 및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
4. 교육여건 개선 지원 업무
5. 교육과정 평가전반의 관리 및 운영 업무
6. 교육과정 질관리 지원 업무
7. 기타 직업교육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업무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